

2022년도

부천의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시책



목 차

1. 경제 분야	_____	1
2. 복지 분야	_____	2
3. 보건 분야	_____	9
4. 도시·주택·교통 분야	_____	10
5. 환경·농업분야	_____	14

□ 경제 분야

제도(시책)명	신규 및 종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부서명
<p>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 공제 확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내국법인의 결손금 소급 공제 허용기간 -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지방 소득세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1.12.31.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지방소득세 <u>소급공제 허용기간</u>을 직전 과세연도에서 <u>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로 확대함</u> -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'21. 12. 31.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조의4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음 	<p>지방세법 (2022. 1. 1.)</p>	<p>세정과</p>

□ 복지 분야

제도(시책)명	신규 및 종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부서명
맞춤형 급여안내 (복지멤버십)	<p><신 규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맞춤형급여 안내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각종 공적 자료를 토대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서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제도 - (절차)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→ 수급 가능성 조사 및 판정 → 수급 가능성 있는 사업 안내 → 급여 신청 - (방식) 문자 및 복지로앱, 전자 우편 등 신청 시 선택한 전자적 통지방법으로 안내, 필요한 경우 서면 통지 	<p>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의2 (2022년 중)</p>	<p>복지 정책과</p>
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• 수급자의 실제소득 중 ‘부양비’ 제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양의무자(1촌의 혈족 및 그 배우자) 기준 폐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양의무자 소득 월834만원(연1억원), 재산 9억원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• 수급자의 실제소득 중 ‘부양비’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	<p>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(21.10.1.조기시행)</p>	

제도(시책)명	신규 및 종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부서명
자산형성 지원사업 〈신 규〉	희망저축계좌 I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대상 : 일하는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• 지원내용 : 본인적립금 대비 1:3 매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탈수급 시 정부지원금 지급 - 본인적립금(월10만원) 대비 정부지원금(월30만원)지원 	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 (2022년)	복지 정책과
	희망저축계좌 II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대상 : 일하는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 • 지원내용 : 본인적립금 대비 1:1 매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인적립금(월10만원) 대비 정부지원금 (월10만원)지원 		
	청년내일저축계좌	<p>〈 청년내일저축계좌(차상위이하) 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대상 :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(만15세~만39세) • 지원내용 : 본인적립금 대비 1:3 매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인적립금(월10만원) 대비 정부지원금(월30만원)지원 <p>〈 청년내일저축계좌(차상위초과) 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대상 :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%초과 100%이하 청년(만19세~만34세) • 지원내용 : 본인적립금 대비 1:1 매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인적립금(월10만원) 대비 정부지원금(월10만원)지원 		

제도(시책)명	신규 및 종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부서명										
영아수당 지원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신·출생 전후 경제적 부담경감 등을 위해 생애 초기 영아 대상 보편적 수당 지급 - 지원대상 : '22년 이후 출생 만0~1세 아동 (24개월간 지급) - 지원금액 : '22년은 30만원 지원, '25년까지 단계적 상향 지원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40px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2022년</th> <th>2023년</th> <th>2024년</th> <th>2025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지원금액</td> <td>30만원</td> <td>35만원</td> <td>40만원</td> <td>5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방식 : 현금지원 	구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지원금액	30만원	35만원	40만원	50만원	아동수당법 제4조 (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)	보육 정책과
구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									
지원금액	30만원	35만원	40만원	50만원										
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 개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 수혜자 (외국인아동, 외국인 아동 보육 어린이집) 확대로 보육 사각지대 해소 - 지원대상 : 외국인 아동 재원 어린이집 - 지원방식 : 외국인 재원 아동수에 따라 운영비 일괄 배분(1인당 22천원 수준) ※ 지원금액만큼 보육료 감면 의무화 	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 (비용의 보조)											

제도(시책)명	신규 및 종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부서명								
낙상예방 등 고령친화안전 하우징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득·재산 상관없이 7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등을 위해 무상 집수리서비스 제공 - 1인당 20만원 범위 내에서 서비스 취사선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득· 재산에 상관 없이 7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등을 위해 무상 집수리서비스 제공 - 2022년부터 화재감지기 필수 설치 - 안전바, 리모컨스위치 등 추가 선택 	노인복지법 제4조의2 (안전사고 예방)	노인 복지과								
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21년 8월 31일까지 화장한 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화장장 이용료의 70% 지급 가능 (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21년 9월 1일 폐지 	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 폐지 (2021.9.1.)									
부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규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시설 이용 -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6개 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(6개 시 : 부천,안산,안양,화성,시흥,광명) ※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시설 사용료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시설</th> <th>부천시 등 6개 市</th> <th>그 외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화장시설</td> <td>16만원</td> <td>100만원</td> </tr> <tr> <td>봉안시설</td> <td>50만원</td> <td>10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화장시설 : 대인(만15세이상,1구)기준 봉안시설 : 개인단(1구)기준</p>	시설		부천시 등 6개 市	그 외	화장시설	16만원	100만원	봉안시설	50만원	100만원
시설	부천시 등 6개 市	그 외										
화장시설	16만원	100만원										
봉안시설	50만원	100만원										

제도(시책)명	신규 및 종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부서명
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 업 량 : 30대 •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천시 거주 등록장애인 및 거동불편 주민을 대상으로 단기간 휠체어 무료 대여 • 접수(예정) : 행정복지센터 복지과 및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	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장애인 복지과
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 간 : 2022. 4. ~ 12. • 인 원 : 80명 • 대 상 : 만19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•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년간 월10만원이내 1:1매칭을 통해 적립금+지원금+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산형성마련을 지원 • 접 수 : 행정복지센터 복지과 	장애인복지법 제9조 (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),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제13조 (장애인의 생활안정)	

제도(시책)명	신규 및 증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부서명
청년기본소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청년기본소득 수급액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적이전소득 산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청년기본소득 공적이전소득 미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상 : 청년기본소득을 수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내용 :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2021. 4분기부터 일시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재산으로 산정 (→ 소득에 미포함) 	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제3항 (2021.10.6.)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진행	아동 청소년과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상 : 만19~34세 부모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중위소득 기준 : 원가구 100%, 청년 60% 내용 : 월 20만원씩 최대12개월 지원 신청 : 2022. 6. ~ 2023. 6. 	주거기본법 제15조 청년기본법 제20조	

제도(시책)명	신규 및 증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부서명
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(1,000만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(1,000만원) 대상 : 만18세 연령도래로 보호 종결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퇴소아동 내용 : 자립정착금 지급(인1회) (지원금 1,000만원→1,500만원) 	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3호	아동 청소년과
아동발달지원계좌 (디딤씨앗통장)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디딤씨앗통장 본인 적립금 1:1 매칭 지원 (지원한도 : 월5만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상 : 만18세 미만 요보호아동 ※ 생계·의료 수급가정, 가정위탁,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입소 아동 내용 : 디딤씨앗통장 본인저축액 1:2 매칭 지원 (지원한도 월5만원→10만원) 	아동복지법 제42조, 제43조, 제44조	
아동수당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 7세미만 아동 아동수당 지급 (월10만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상 : 만 8세 미만 아동 (지급 대상 연령 확대) 내용 : 아동수당 지원 (지원금 월10만원) 	아동수당법 제4조 (2022. 4. 1.)	
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17세미만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(월15만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상 : 만17세 미만 입양아동 내용 : 양육수당 지원 (지원금 월15만원→20만원) 	입양특례법 제35조	

□ 보건 분야

제도(시책)명	신규 및 종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부서명
공유주방 개념 신설	<신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상 : 공유주방 영업자 •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유주방의 개념을 신설하고 공유주방 운영을 하려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,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<p>※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진행중임 (공유주방운영의 정의, 영업등록 절차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)</p>	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의2 및 제36조제1항, 제41조의2, 제44조의2 (2021.12.30.)	식품 위생과
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대상 위생교육 주기 단축	종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상 : 집단급식소 조리사 및 영양사 •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대상 위생교육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	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(2022.1.1.)	
식육가공품 유형에 식육간편 조리세트 추가	<신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상 : 식육가공품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•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식육가공품 유형에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추가하고, 식육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 범위에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드는 영업을 추가함 	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21조제3호·4호 (2022.1.1.)	

□ 도시·주택·교통분야

제도(시책)명	신규 및 종전	달라지는 내용	근거 (시행일)	부서명
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	주거급여 선정기준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거급여 선정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준중위소득 상향 조정 (현행 45% → 46%) •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차급여 : 전월세 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- 수선유지급여 : 자가가구 주택 수선 (기준 보수비 범위 내) 	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048호 ('22.1.1.)	
임대사업자 보증가입 면제사유 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든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- 기존 임대주택사업자는 2021. 8. 18. 이후 계약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의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면제사유로 규정 • 대 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이하이고 보증 미가입에 임차인 동의한 경우 - 공공주택사업자와 계약체결을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 가입한 경우 - 임차인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사업자가 보증수수료 전부지급한 경우 	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(2021.9.14.)	공동 주택과

제도(시책)명	신규 및 종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부서명
보증 미가입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요내용 - 보증 미가입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요내용 - 위반 건당 임대보증금의 10%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되, 상한액(건당 3천만원) 설정 	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(2022.1.15.)	공동 주택과
임대사업자 일부보증의 요건 보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요내용 -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보증금에 대해 일부 보증가입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요내용 -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임차인이 일부보증에 동의한 경우 보증금에 대해 일부 보증가입 가능 	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(2021.9.14.)	
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직권 말소 가능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규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요내용 - 보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 말소 가능 	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(2022.1.15.)	

제도(시책)명	신규 및 종전	달라지는 내용	근거 (시행일)	부서명
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사유 추가	<신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요내용 - 임대사업자 설명의무 위반, 보증금 미반환, 임대차계약 신고 거짓보고 및 3회 이상 불응하여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 이내 등록 제한 	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(2021.9.14.)	공동 주택과
임대차계약 갱신가능 기간 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요내용 - 임차인은 임대 의무기간 이후에는 계약 갱신 여부가 불분명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요내용 -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‘임대 의무기간’에서 ‘임대 등록기간(임대개시일 등으로부터 임대 등록 말소일까지)’으로 연장 	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(2021.9.14.)	

제도(시책)명	신규 및 종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부서명																
<p>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(위반 시 과태료 최대 60만원 부과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종전 최고 과태료 30만원 부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17 392 1503 1066"> <thead> <tr> <th>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경과시</th> <th>최 초</th> <th>가 산</th> <th>최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/td> <td>30일 이내</td> <td>30일 초과 114일 이내</td> <td>115일 이상</td> </tr> <tr> <td>당초 금액</td> <td>2만원</td> <td>매3일 1만원</td> <td>30만원</td> </tr> <tr> <td>변경 금액</td> <td>4만원</td> <td>매3일 2만원</td> <td>6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경과시	최 초	가 산	최 고		30일 이내	30일 초과 114일 이내	115일 이상	당초 금액	2만원	매3일 1만원	30만원	변경 금액	4만원	매3일 2만원	60만원	<p>자동차관리법 제43조, 제43조의2 등 (‘22. 4. 14.시행)</p>	<p>차량등록과</p>
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경과시	최 초	가 산	최 고																	
	30일 이내	30일 초과 114일 이내	115일 이상																	
당초 금액	2만원	매3일 1만원	30만원																	
변경 금액	4만원	매3일 2만원	60만원																	

□ 환경·농업 분야

제도(시책)명	신규 및 종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부서명
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(농지원부 -> 농지대장으로 개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2. 4. 15. 이전 - 공부 명칭: 농지원부 - 작성 기준: 농업인(세대) - 작성대상: 농지 1천㎡ 이상 - 관할 행정청: 농업인 주소지 - 관리방식: 직권주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변경 일: 2022. 4. 15.부터 • 주요 개선 내용 - 공부 명칭 변경: 농지원부 -> 농지대장 - 작성기준 변경: 농업인(세대) -> 농지필지(지번) - 작성대상 변경: 농지 1천㎡ 이상 -> 모든 농지 - 관할행정청 변경: 농업인 주소지 -> 농지 소재지 - 관리방식 변경: 직권주의 -> 신고주의* * 임대차 계약발생·변경 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 부여 	「농지법 시행령」 제70조 (2021.10.14.)	도시농업과
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금지 (위반 시 과태료 최대 20만원 부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종전 단속범위 - 전기차 급속충전구역 - 100면 이상 • 종전 단속대상 - 일반차: 주차 - 전기차: 급속충전구역에서 충전시작 후 1시간 경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속범위 확대 - 전기차 급속충전구역 및 완속충전구역 - 50면 이상 • 단속대상 확대 - 일반차: 주차 - 전기차: 급속충전구역에서 충전시작 후 1시간 경과 및 완속충전구역에서 충전 시작 후 14시간 경과 	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(‘22. 1. 28.)	미세먼지 대책과